내용증명

발신인: 김애경

주소 : 부산시 사상구 주례로 231동양아파트 6동 503호

전화번호: 010-2553-6845

수신인 :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대표이사: 전영묵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74길 11

전화번호: 1588-3114

제목 : 확정보험의 확정배당금과 배당금의 확정배당금(금리차배당)의 경제적용어를 같은 용어를 사용하여 계약자를 기만한점.

 삼성생명보험직원의 결정적인(예정이율) 서류누락으로 만기보험금을 전액 수령못하게 한점.

가). 1989년 10월 20일 증권번호 14736062호 보험기간 22년 납입기간 15년

만기일자는 2011년 10월 20일로 정한 삼성영재 교육보험(종합형)에 대하여 가입

2011년 10월 20일 계약종료되었습니다.

나). 위 가항의 성실히 납부하였고, 가입설계서상에 계약자 생존시 지급받을

총합계지급액 35,170,000원에서 학자금 20,500,000원 및 축하금 6,100,000원을 수령하였지만, 나머지 확정배당금 8,570,000원은 미지급상태입니다.

다). 삼성생명측의 주장인

 보험료 산출기초에 적용된 예정이율이 동일 보험년도중의 1년만기 정기예금이율(이하 정기예금이라한다) -0.5% 낮은보험으로써 매보험년도말 현재 유효하나 계약으로 한다.

 위 문항의 금리차배당금인 확정배당금으로 계약자를 기만하였습니다.

확정보험인 확정금리(예정이율)의 총합계지급액이 배당금의 은행금리영향을 받는

금리차배당금을 확정배당금으로 사용하여 계약자를 혼돈되게 말입니다.

결론은 총합계지급액은 금리변동이 없이 총합계지급금은 지급되는것입니다.

라). 예정이율이 표기된 문항이 있으면 지급하겠다고 한 회사직원은

 사업방법서의 예정이율문항을 고의적으로 누락한 사업방법서를 발급해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차후 예정이율문항이 있는 사업방법서를 법원에서 받은 것을 발견하여 지급요구를 하니 이번에는 소멸시효 2년이 경과하여 지급거절입니다.

 계속적으로 정당한 지급요구를 구하였는데,

 그동안 회사측에서 묵살, 지급 거절되었는데 말입니다.

마). 화폐상승에 따라 미지급금 8,570,000원을 10년의 세월만큼 곱한 금액을

요구합니다

바). 지급시일은 서류검토를 다하실수 있는 기간으로 2021년 11월 30일까지

지급바랍니다.

 2021년 10월 18일